

---

문서번호 : 10-12-노동-03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담당: 전명훈 간사 / T. 02-522-7284)  
제 목 : [성명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0. 12. 9.(목)  
전송매수 : 총 3매

---

## [성명서]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를 규탄한다

현대자동차는 12. 8. 어제 울산 1공장 농성자 32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모두 419명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16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 외에도 법원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제기하는가 하면,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행위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협박행위이자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이다. 5년간의 법적 공방을 거쳐서 내려진 지난 7월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는 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에 따르면 불법파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를 이용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용은 여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지속해서는 안 되고 불법파견으로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계속 하청 노동자라고 주장하면서 차별적인 임금,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및 차별의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된다. 차별행위 역시 시급히 시정해야 할 일이다.

현대자동차든 그 누구든 범법행위인 불법파견행위를 계속할 때 그 범법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의무이자 권리이다. 하물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에게 불법파견행위를 중단하고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는다.

중간착취와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농성이라는 수단을 선택하기 이전에 현대자동차는 무엇을 하였는지 짚어보아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이 원고로 참여한 2인의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시정은커녕 대화조차 거부해왔다. 대법원 판결은, 비록 소를 제기한 원고는 2인이지만 현대자동차 제조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방식에 대해 불법파견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어서 현대자동차의 주장은 억지스럽고 험량하기 이를 데 없다.

현대자동차의 농성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인된 불법행위를 뻔히 보고도 그냥 방치해야 하는가. 중단시켜야 하는가. 그 중단행위를 했다는 것이 불법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파업에 손해배상 책임은, 설사 그 파업이 불법파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도한 노조간부가 아닌 평조합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나아가 자동차 회사의 손해는 자동차 생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 실제 자동차 판매계약이 중국적으로 취소되어 발생하는 것이 손해이므로 파업으로 인하여 생산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적반하장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더 큰 불법행위를 감추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하여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가 거꾸로 사법기관에 그 피해노동자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 값을 주고 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패륜적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용납될 수 없다.

하나, 우리는 노동부에게 요구한다. 노동부가 공정한 준법질서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

저 현재 8,000여명에 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노동부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 총 800억을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1500만원씩, 총 1200억, 그 다음에는 2000만원씩 1600억을 계속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검찰에게 요구한다. 오늘이라도 당장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대하여 불법파견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바란다. 그리고 10,000여명의 가까운 노동자들을 수년 동안 계속 불법파견과 중간착취를 행하고,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파견'의 범죄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즉각 구속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법원에게 요구한다. 현대자동차의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은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함으로써 자초한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부정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